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4076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피고, 피항소인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구합5629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93,939,630원, 지방교육세 16,796,55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취득세 21,973,530원, 지방교육세 1,255,6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13면 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등 참조), 종전 조례의 폐지일 이전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결론은 앞서 본 바와 다르지 않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종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면서 제74조 제1항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취득세 면제규정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규정인 제177조의2의 적용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 2019.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177조의2 본문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신설되었다. 다만, 위 제177조의2 단서 제2호에서 제74조에 따른 감면은 위 감면특례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단서 제2호에서는 제74조를 삭제하여 위 감면특례의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 제3호에 따라 감면특례의 제한은 2020. 1.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



고(그에 따라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 그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5조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²⁾

2) 그러나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1)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미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미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5호, 2020. 1. 15.) 제5조 및 제17조는 사업시행인가 시점(2020. 1. 1.)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유예한다거나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상, 취득세 감면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는 그와 별도로 같은 법 제177조의2 및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 제3호에 명시된 적용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점[즉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위 부칙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가리면 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그 적용 여부를 다시 일반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5호, 2020. 1. 15.) 제10조에 따라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③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인가일이 2010. 6. 1.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일은 2021. 8. 13.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85호, 2020. 1. 15.)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77조의2 및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제5조 제3호에 따라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시행시기가 2020. 1. 1.부터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점(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1-0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판사 박○○